

제 11 장 통신

제 11.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 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 다.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 라.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2. 제1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및 서비스를 설치 · 구축 · 취득 · 임대 · 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기업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 다.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 구축 · 취득 · 임대 · 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승인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 라. 자가망을 운영하는 인이 제3자에게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망을 이용하는 것을 당사국이 금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제 1 절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 11.2 조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¹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그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바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 또는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다.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그 당사국의 영역 내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나 다른 기업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 라. 교환, 신호 및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 마. 통신 망 및 서비스를 공중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업이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그러한 기업의 사내통신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달리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1.2 조는 당사국이 기업에게 자국의 영역 내에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면허, 양여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 11.2 조의 목적상, “기업”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라고 해석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 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또는

라. 통보, 등록 및 면허

제 2 절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

제 11.3 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자회사,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요율 또는 품질, 그리고

나.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제 11.4 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국 영역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²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제 11.5 조 상호접속

일반조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제공된다.

나. 자신의 동종 서비스,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신의 자회사 또는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된다.

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 적절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라.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된 지점에서 제공된다.

상호접속 교섭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가능성

² 콜롬비아의 경우, “반경쟁적 교차보조”라는 용어는 이윤압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교섭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상호접속협정의 투명성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제 11.6 조 재판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³

제 11.7 조 망 요소 세분화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망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공급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 절 그 밖의 조치

제 11.8 조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아니한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³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 나. 그러한 서비스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 다. 그러한 서비스의 요율표를 제출할 것
 -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 마. 공중 전송 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기술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9 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 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 11.10 조 보편적 서비스

-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갖는다.
-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⁴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11.11 조 면허 절차

- 1. 당사국이 공중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면허, 양여, 허가, 등록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⁴ 콜롬비아의 경우, “경쟁중립적”이라는 용어는 경쟁적 및 기술적 중립성을 둘다 포함한다.

-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면허 또는 승인의 기준 및 절차
 - 나. 면허, 양여, 허가, 등록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을 위한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 다. 모든 면허나 승인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면허, 양여, 허가, 등록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에 대한 거부 사유를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1.12 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및 선로 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 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 3.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9.4조(시장 접근)가 제8장(투자)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든지 간에, 제9.4조(시장 접근)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 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11.13 조 통신 분쟁의 해결⁵

제18.3조(행정절차) 및 제18.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구제신청

- 가. 1)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은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

⁵ 양 당사국은 제 11.13 조의 목적상, “기업”이라는 용어가 오직 자연인 또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여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다른 관련 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 2)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부가서비스⁶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중 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⁷

-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⁸ 어떠한 당사국도, 적절한 당국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청원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⁹ 그리고

사법적 재심

- 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11.14 조 투명성

제18.1조(공표)와 제18.2조(통지 및 정보 제공)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⁶ 부가서비스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⁷ 한국의 경우, 나호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간, 또는 통신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⁸ 콜롬비아의 경우, 나호에 관하여 기업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 11.17 조에 정의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결정의 재검토를 청원할 수 없다.

⁹ 이 호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경우, 만약 재검토 청원이 제출되면, 재검토 결과가 계류중인 동안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재검토 청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진다.

- 가. 규범제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범 제정과 자국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요율표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 나. 이해관계인이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 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 그리고
- 다. 다음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¹⁰ 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 1)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 2) 사법적 및 그 밖의 심판진행에 관한 절차
 - 3)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4)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 개정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
 - 5)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부착하는 데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 6)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요건

제 11.15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 11.16 조 기술적 협력

부가서비스뿐만 아니라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민간분야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기술적 정보의 교환, 정부 대 정부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밖의 관련 활동에 있어 협력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은 통신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존의 교환 및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에 특별한 중점을 둔다.

제 11.17 조

¹⁰ 부가서비스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 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3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하며, 그 기업의 지점을 포함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 둘 다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해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통신이란 그것을 통해 회사가 그 회사 내에서 또는 자신의 자회사, 지점, 및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계열사와, 또는 이러한 자회사, 지점 및 계열사 간에 하는 통신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상 “자회사”, “지점”,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계열사”는 각 당사국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다. “사내통신”에는 관련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가 아닌 회사에게 공급되거나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해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을 말한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공중통신 전송 망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되거나 통신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상호접속을 위한 약관, 요율 및 조건이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이를 수락할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가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으로서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구를 말한다.

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당사국의 관련된 법 또는 규정에 각각 정의된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부가서비스인지 분류할 수 있다.